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73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이헌승·정성국·박성민

김상훈 · 김 건 · 곽규택

김소희 · 김선교 · 서지영

서범수 · 박덕흠 · 윤상현

조경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 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7의2. 금융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5(상속인등의 거래정보등 제공 신청 등) ① 명의인이 사망한경우(명의인이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는 상속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1. 명의인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2.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다만, 명의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

다.

- 3.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다만, 명의인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민법」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인
- 5.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 ②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등에게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등의 신청자격 확인 및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거래정보등의 신청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3·제4조의5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 |
|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 |
|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 |
|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 |
|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 | |
|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 |
|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 |
|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 |
|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 |
|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 | |
|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 |
|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 |
|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 |
|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하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7의2. 금융위원회가 필요로 하 |
| | 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
| |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명의인 |

8.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 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 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 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 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 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 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 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

| 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 |
|--------------------|
| 청한 경우 |
| 8. (현행과 같음) |
| ② |
| 제7호까지, 제 |
| <u> 7호의2 및 제8호</u> |
| |
| |
| |
| <u>금융회사등</u> |
| |
| <u>삭제></u> |

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5(상속인등의 거래정보등 제공 신청 등) ①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명의인이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는 상속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제공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신청할수 있다.

- 1. 명의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2.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 따른 미성년후견인. 다만, 명의인의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 3.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 년후견인. 다만, 명의인의 상 속인이 피성년후견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민법」 제1001조에 따른상속인
- 5.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 ②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등에게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지체없 이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 공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상속인등의신청자격 확인 및 거래정보등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 저 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 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의 제공에 있어서 제3항에 | 따 |
|---|-----------------------------------|------------|
| | 른 전산시스템과 「민원 처 | 리 |
| |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개 | 네 <u>3</u> |
| | 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 | ·구 |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u>스</u> |
| | 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 | 다 <u>.</u> |
|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 | 른 |
| | 거래정보등의 제공 및 제3항 | ·에 |
| |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 금 |
| | 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 _ 있 |
| | 다. | |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 | 한 |
| | 사항 외에 거래정보등의 신 | |
| | 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 | |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 |]7조(과태료) ① | |
| | | |
| | | |
| | <u>제</u> 4조의3·제4조의5제2 | 항 |
| | 슬 | _ <u>_</u> |
| | | |
| | | |
| | | |